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8.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정훈의원)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

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2022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산정 기준학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었고, 현재 시·도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통합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과 각 시·도의 「공립 학교 회계규칙」은 구매내역 공개, 재정분석 및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대안학교의 책임감 있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재 모든 국·공립 대안학교에(공립 24개교)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현실과 부합하고, 사립 대안학교는 「사립

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고유의 교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형평 차원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과 관련, 2024년 기준 1개교가 교무/학사 용도로 NEIS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공립 대안학교는 모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립 대안학교도 다수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가 예산·회계 업무 등에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33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53조의3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을 받지 않는 각종학교는 여기서 제외하였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차후 이를 지원받으려는 사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이용여부가 사실상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기되, 현행 법 체계상 이용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학년도 시작일에 맞추어 2026년 3월 1일로 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기존에도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라 건강검사기록의 작성·관리 의무 학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30조의5와 같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에서도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 이용을 규정하게 되므로 학생 건강검사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제30조의6을 대안학교에 적용하도록 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공·사립 대안학교는 정보시스템 이용이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또한 학기 중간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기되, 현행법 체계상 이용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학년도 시작일에 맞춘 2026년 3월 1일로 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2제1항 중 “대안학교”를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안 제6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26년 3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u>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u>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 -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u> ----- ----- -----.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 ----- ----- -제60조의3에 따른 <u>대안학교</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생략) <u><신설></u>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하고 대안학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u>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u>

②· ③ (생 략)	<u>· 운영하거나 대안 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u>	<u>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⑤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 칙 -----2026년 3월 1일부터-----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을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신 설></u> <u>②</u> · <u>③</u> (생 략)	<u>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u> <u>④</u> · <u>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